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33호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의회 의장인

1. 개정이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조정

2. 주요내용

가. 조문 수정(안 제2조제2호)

- 국·실·과·원·소장급 -> 국·실장·담당관·과장급

나. 조문 수정(안 제2조제4호)

- 국·실·과장 -> 국·실장·담당관·과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실·과·원·소장급”을 “국·실장·담당관·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실·과장”을 “국·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실·과·원·소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생 략)	제2조(범위) ----------. 1. (현행과 같음) 2. ---------- 국·실장·담당관·과장급 3. 「지방자치법」---------- 4. ---------- 국·실장·담당관·과장-------- 5. (현행과 같음)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담당관·과·원·소장과 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